

# 「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 외 20명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역상생구역의 기준, 자율상권조합 설립 구비서류(안 제4조~제5조)
-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, 조합 사업 지원, 지원 절차(안 제6조~제8조)
- 조합 사업결과 보고, 자율상권구역 재산 관리(안 제9조~제10조)
-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(안 제11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-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써,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켜 지역 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